

연구박사규정

시행 : 2017.12.1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연구박사의 자격, 임용절차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연구박사라 함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본교의 전임교원의 지도를 받아 연구, 강의 및 학술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 연구박사는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학술연구에 대한 열의를 가진 자라야 한다.

제4조(임용절차) ① 교비로 임용되는 연구박사는 각 대학(원)장, 대학원장 또는 연구원(소)장의 추천을 받아 연구박사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② 외부기관 지원 혹은 대응교비로 임용되는 연구박사는 연구박사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각 사업팀에서 해당지원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선발·추천하고 해당 대학(원)장 또는 연구소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용한다.

제5조(주관부서) 연구박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는 연구처에서 주관한다.

제6조(구비서류) 연구박사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연구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본교 소정의 연구박사지원 신청서

2. 연구계획서

3. 지도교수 추천서

4.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5. 경력 및 재직 증명서

6. 연구실적 목록

7. 연구실적물

8. 주민등록 등본

9. 지도교수의 지도계획서

10. 기타 연구처장이 요구하는 서류

제7조(연구박사 선발위원회) ① 연구박사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구처장, 교무처장, 대학원장(이상 당연직)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서울 및 국제캠퍼스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선발인원) 선발인원은 본교설정을 감안하여 총장이 정한다.

제9조(연구비 지급) ① 연구박사에게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급한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이외의 체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임용기간) 연구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연구프로젝트 등 기간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임용할 수 있다.

제11조(준수사항) 연구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연구에 전념
2. 소속대학(학부) 또는 소속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당 6시간이내의 강의를 담당
3. 학술에 관한 사무를 수행
4. 임용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타기관에 출강 또는 타 업무 겸직 금지
5. 본교 교육시책에 적극 협조
6. 교육자로서의 품위 유지

제12조(임용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연구박사 임용기준이 되는 각종 증명서 또는 연구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5. 당사자가 해지를 원하는 경우

제13조(연구비 정산) 연구비는 본교 「연구비관리규정」 제11조 혹은 제26조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규정 및 관계법령을 준용하거나 또는 별도로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7년 7월 3일부로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7년 12월 11일부로 시행한다.